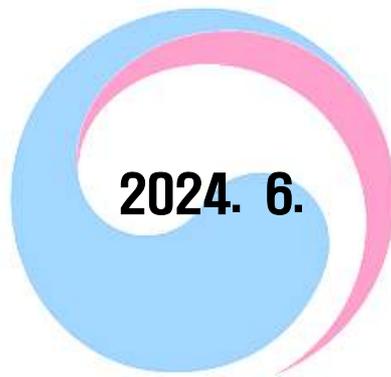


**2024년도 상품분류사업
과업지시서**



**상표디자인심사국
상표심사정책과**

목 차

1. 사업개요	1
1-1. 사업의 명칭	1
1-2. 사업의 목적	1
1-3. 사업의 내용	1
1-4. 사업기간 및 사업량	1
2. 사업수행 절차 및 방법	2
2-1. 사업추진 체계	2
2-2. 지정상품 분류대상 선정 및 의뢰	3
2-3. 지정상품의 분류	3
2-4. 보고서의 납품 및 검수	4
2-5. 대가의 지급 및 정산	5
3. 비밀준수 및 보안관리	6
3-1. 비밀준수 의무	6
3-2. 인력 및 자료의 보안	6
3-3. 시설 및 장비의 보안	6
4. 사업운영·감독 및 평가, 기타 사항	7
4-1. 사업운영·감독 및 평가	7
4-2. 기타사항	7
[서식]	8

1. 사업개요

1-1. 사업의 명칭

- 2024년도 상품분류사업

1-2. 사업의 목적

- 상품심사에 필요한 지정상품의 분류를 전문기관에 의뢰함으로써 분류에 따른 업무 부담을 완화하여 심사품질 향상에 기여

1-3. 사업의 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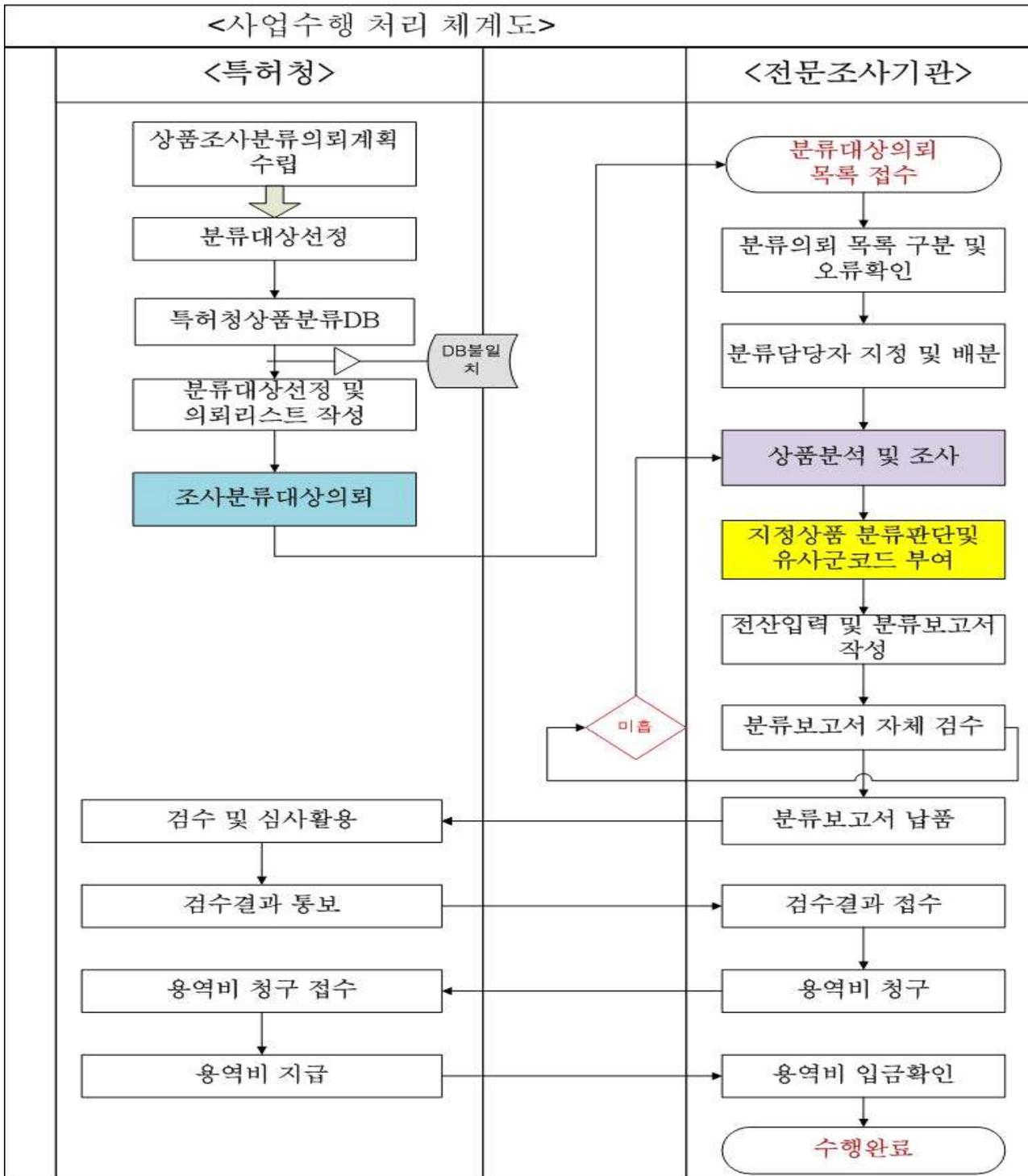
-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특허청에 구축된 상품분류 DB와 불일치하여 자동으로 유사군 코드가 부여되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 상품분류체계와 상품분류기준에 맞도록 분류하여,
- 명확한 지정상품인 경우에는 유사군코드를 부여하고, 명확하지 않을 시에는 미확정원인을 '타류지정', '포괄명칭', '기타불명확' 등으로 표기하여 상표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제공함

1-4. 사업기간 및 사업량

- 사업기간은 2024. 7. 1로부터 2024. 12. 31까지임
- 1월 단위로 납품하며, 전문기관별 사업량은 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름

2. 사업수행 절차 및 방법

2-1. 사업추진체계



2-2. 지정상품 분류대상 선정 및 의뢰

(1) 의뢰물량 선정

- 지정상품 분류대상 상품의 선정과 목록의 작성은 특허청이 수행함
- 상표심사정책과장은 연간 분류의뢰 물량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 분류의뢰 물량을 상품류별로 월별 배분하여 전문기관에 통보함
- 상표심사정책과와 전문기관은 통보된 계획물량에 따라 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시 협의함

(2) 의뢰시기

- 월별 사업량은 특허청과 전문기관이 맺은 계약물량을 월별로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출원량과 심사실정 등을 고려하여 조정가능

(3) 의뢰대상 및 의뢰방식

- 지정상품 분류대상 상품은 니스 분류(국제상품분류)에 따라 선정하되, 상표 출원과 심사진행 현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월 단위로 결정하고, 필요시 수시 의뢰할 수 있음
- 의뢰대상 건은 1개 상품을 1개 의뢰 건으로 간주함을 원칙으로 함
- 상품분류 의뢰는 특허청 상표 심사시스템에 의해 처리함
- 특허청은 목록의 통보와 함께 분류에 필요한 출원 상표의 다음 정보를 전문기관에 제공함
 - 출원번호, 출원일자, 출원인명, 상품류, 지정상품명 등 서지사항 정보

2-3. 지정상품의 분류

(1) 분류조사원의 지정

- 지정상품의 분류는 전문기관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, 전문기관은 특허청으로부터 의뢰받은 분류물량에 대한 분류업무를 수행시 전담 분류조사원을 지정하여 운영
- 분류조사원의 지정 및 교체시 다음 사항 고려
 - 상표에 관한 이론교육, 현장실습 교육 등의 직무교육 및 실무수습 교육을 이수하거나 상표 관련 실무 경력이 있는 인력
 - 분류조사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교체내용을 당해 상표심사정책과장에 통보

(2) 분류대상 : 특허청 '2024년도 상표심사지원사업 기본계획'에 의거하되, 니스분류(국제상품분류)에 따른 상표출원의 지정상품

(3) 분류방법

- 지정상품 분류의 방법과 절차는 원칙적으로 특허청이 정한 과업 지시서와 전문기관이 작성한 사업수행계획서가 정한 바에 의함
- 본 사업에서 “지정상품 분류”라 함은 특허청이 조사 분류 의뢰한 상표 출원의 지정상품이 상품분류체계와 상품분류기준에 따라 축적된 정보와 자료 검색을 통해 유사군 코드를 부여하는 것을 말함
- 명확한 지정상품인 경우에는 해당 유사군 코드를 부여하고, 명확하지 않을 시에는 미확정원인인 타류지정, 포괄명칭, 기타불명확 등으로 표기하여 상표심사관에게 이송함
- 본 사업에서 상품 분류는 원칙적으로 상표법령, 특허청의 유사상품 심사기준, 상품의 명칭과 류구분에 관한 고시, 상품·서비스업 유사군 코드 해설집, 서비스표 심사 세부 처리지침 및 요령 등이 정한 기준에 의하되 니스 협정의 류별 특징, 한국 유사군 코드의 개별 특성을 고려하여 판단함
- 특허청은 보유한 상품 관련 정보 중에서 다음 정보를 전문기관에 제공함
 - 유사상품 심사기준(니스 제9판, 니스 제10판, 니스 제11판 기준), 상품 및 서비스업 분류목록, 상품·서비스업 유사군 코드 해설집
 - 특허청이 보유한 상품분류 데이터베이스

2-4. 보고서의 납품 및 접수

(1) 결과납품

- 1개월 단위의 지정상품 분류 보고서 납품
- 전문기관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'상품분류 결과 납품서',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'상품분류 결과 납품 내역서' 및 '상품분류 보고서'를 서면 및 특허청이 지정하는 형식의 전자데이터(특허청 분류시스템에 탑재 가능한 전자파일)로 외부와 차단된 전용망을 통하여 납품
- 지정상품 분류 보고서는 분류의뢰 상품의 서지사항, 니스분류(국제

상품분류), 유사군코드, 미확정원인, 검토의견 등을 포함한 지정상품 분류보고서와 지정상품 분류 LIST 등을 함께 제출

(2) 납품기간

- 차수별 분류 의뢰에 대한 납품은 분류 의뢰 후 40일 이내(단, 분류 완료된 보고서에 대하여 심사의 신속성을 위해 수시 납품 가능)

(3) 납품기간의 연장

- 지정상품 분류가 난해하는 등 납품기간 내 분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, 분류조사원은 사전에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 사업담당자와 협의하고 허락을 득한 후 납품기간을 연장(이 경우, 연장된 일수는 조사이행 납품기간으로 보며 지체상금은 부과하지 아니함)

(4) 보고서 접수

- 납품 목록 및 보고서의 검수와 검사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특허청이 실시함
 - 1차 검수 : 물량 검수(상표심사정책과)
 - 2차 검사 : 내용 검사(상표심사관)
- 검수는 의뢰목록과 납품목록이 일치하는지와 납품목록과 보고서의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조사하며, 일치하지 않는 목록이 있는 때에는 일치하는 목록만을 검수하고 일치하지 않는 목록은 계약 당시에 정한 기준에 따라 처리함
- 검사는 상표심사관이 검사하고 검사결과를 「상표조사 등 상표심사 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」(특허청 고시 제2021-21호) [별표2의2] “분류원 품질평가 기준”에 따라 검수자(상표심사정책과)에 통보함
- 검사결과 “분류 불가능”으로 보고된 상품은 그 사유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처리하며, “분류 불가능”의 사유가 적정한 경우에는 평가점수 산출대상에서 제외함
- 검사결과 “오분류”로 통보된 보고서는 전문기관에 소명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며, 계약 당시에 정한 기준에 따라 처리함

2-5. 대가의 지급 및 정산

- 용역대금은 전문기관의 청구에 의거하여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

지급하되, 계약 당시에 정한 기준에 따름

3. 비밀준수 및 보안관리

3-1. 비밀준수 의무

- 전문기관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됨
- 전문기관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가 본 사업과 관련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때에는 특허법 제226조의2, 디자인보호법 제226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69조 및 제70조 내지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청 직원과 같은 기준으로 처벌됨

3-2. 인력 및 자료의 보안

- 전문기관은 정보의 중요도, 정보의 절취 및 유출시 손실가치, 파괴시 복구비용, 정보의 사용자 등에 따라 보안등급을 분류하고 각각에 맞는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함
- 전문기관은 보안관리의 중요성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자체 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해야 함

3-3. 시설 및 장비의 보안

- 전문기관은 개인용 PC를 통한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 출력용 주변기기(CD-R/RW, 하드랙 등)는 지정한 PC에만 장착하고 주변기기의 장착을 제한해야 함
-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전산장비는 사용자 및 용도에 따라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사용해야 함
- 전문기관은 온라인을 통한 자료의 외부유출 방지를 위해 개인용 FTP (파일 전송프로토콜)의 서버 운영을 제한해야 함
- 전문기관은 외부 컴퓨터 바이러스의 침입으로부터 자료를 보호하기 위해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해야 함
- 전문기관은 시설보안을 위해 외부인력의 출입통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

4. 사업운영·감독 및 평가, 기타 사항

4-1. 사업운영·감독 및 평가

- 특허청은 상표법령, 특허청고시(제2021-21호) 및 사업세부지침 등의 규정에 따라 본 사업의 운영 및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
- 특허청은 본 사업과 관련한 전문기관의 사업내용을 평가할 수 있으며, 그 결과를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음

4-2. 기타 사항

- 본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허청과 전문기관의 합의를 거쳐 본 과업지시서를 보완 또는 변경할 수 있음

[서식]

[별지 제1호 서식] 상품분류 의뢰서

[별지 제2호 서식] 상품분류 결과 납품서

[별지 제3호 서식] 상품분류 결과 납품내역서

[별지 제4호 서식] 납품기간 연장 승인서

[별지 제1호 서식]

()월 상품분류 의뢰서

분류의뢰일 :

연번	출원번호	의뢰일자	NICE 버전	니스류	지정 상품명	출원일자	상표명	비고

[별지 제2호 서식]

()월 상품분류 결과 납품서

납품서 제출일 :

전문기관명:

사업명	계약물량	납품건(월)	비고

[별지 제3호 서식]

()월 상품분류 결과 납품내역서

납품서 제출일 :

전문기관명:

연번	출원번호	NICE분류	의뢰건수	납품건수	의뢰일자	납품일자	비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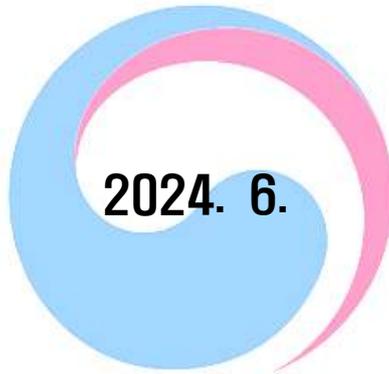
[별지 제4호 서식]

납품기간 연장 승인서

기간연장승인일 : 20 . . .

연번	출원번호	조사연장기간	연장사유	분류사업 담당자

**2024년도 국제상표등록출원
영문지정상품 번역 및 분류사업
과업지시서**



**상표디자인심사국
상표심사정책과**

목 차

1. 사업개요	1
1-1. 사업의 명칭	1
1-2. 사업의 목적	1
1-3. 사업의 내용	1
1-4. 사업기간 및 사업량	1
2. 사업수행 절차 및 방법	2
2-1. 사업추진 체계	2
2-2. 번역 및 분류 대상 선정 및 의뢰	3
2-3. 지정상품의 번역	3
2-4. 지정상품의 분류	4
2-5. 보고서의 납품 및 검수	5
2-5. 대가의 지급 및 정산	7
3. 비밀준수 및 보안관리	7
3-1. 비밀준수 의무	7
3-2. 인력 및 자료의 보안	7
3-3. 시설 및 장비의 보안	7
4. 사업운영·감독 및 평가, 기타 사항	8
4-1. 사업운영·감독 및 평가	8
4-2. 기타사항	8
[서식]	9

1. 사업개요

1-1. 사업의 명칭

- 2024년도 국제상표등록출원 영문지정상품 번역 및 분류사업

1-2. 사업의 목적

-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심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영문 지정상품의 번역과 상품분류를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함으로써,
- 업무부담을 완화하여 신속한 상표심사 및 심사품질의 향상에 기여

1-3. 사업의 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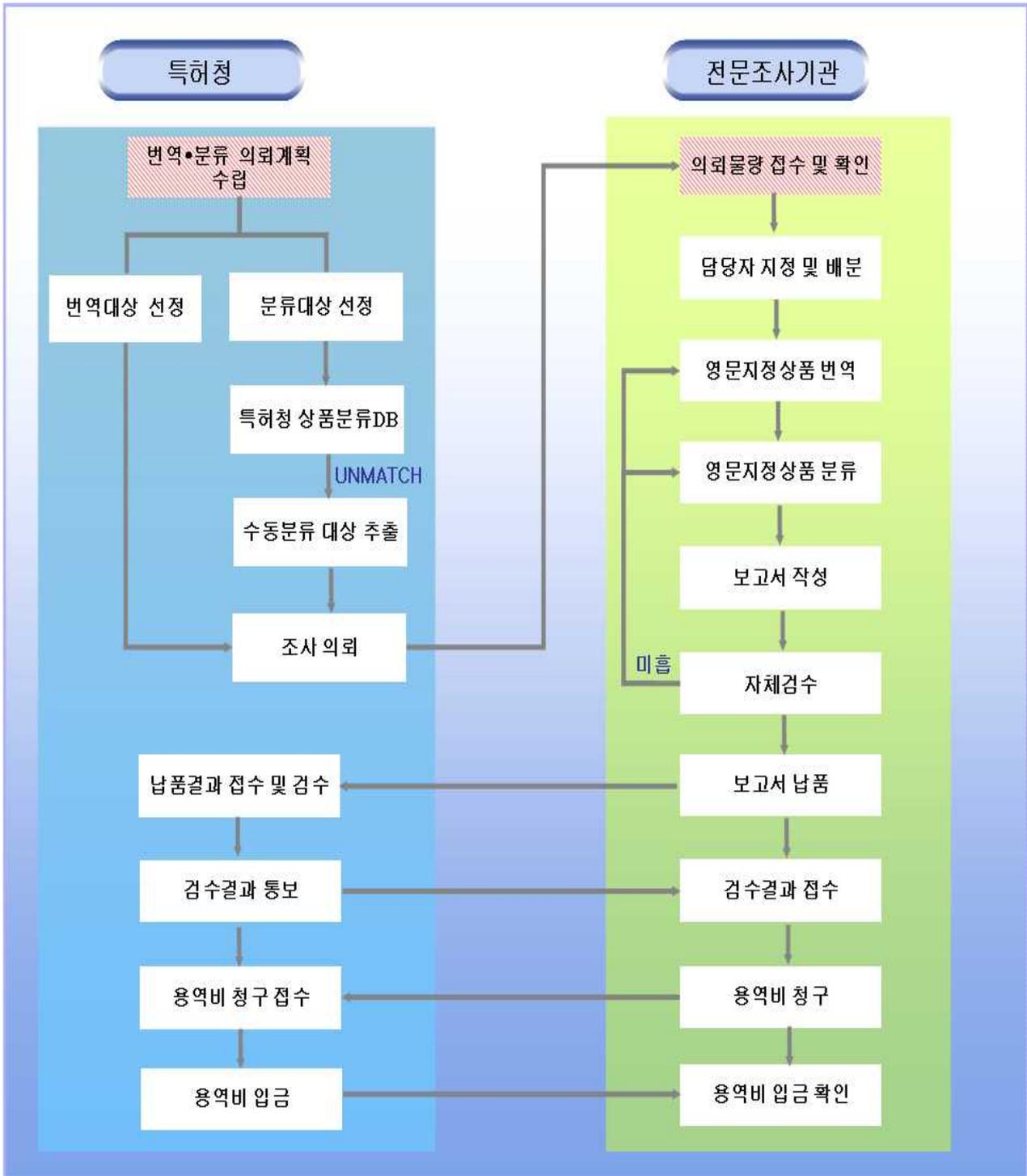
- 지정상품의 번역
 -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 중 특허청이 번역 및 분류 의뢰한 상품의 명칭을 문법에 맞게 국문으로 번역함과 동시에 올바르게 표현하고 정리하여, 그 결과가 “니스 분류(국제상품분류)”에서 정한 상품 명칭 기준에 일치하게 함
- 지정상품의 분류
 - 번역이 완료된 지정상품 중 특허청에 구축된 상품분류 DB와 불일치하여 자동으로 유사군 코드가 부여되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 상품분류 체계와 상품분류기준에 맞도록 분류하여,
 - 이것이 명확한 지정상품인 경우에는 유사군 코드를 부여하고, 명확하지 않을 시에는 미확정원인을 ‘타류지정’, ‘포괄명칭’, ‘기타불명확’ 등으로 표기하여 상표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제공함

1-4. 사업기간 및 사업량

- 사업기간은 2024. 7. 1로부터 2024. 12. 31까지임
- 1월 단위로 납품하며, 전문기관별 사업량은 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름

2. 사업수행 절차 및 방법

2-1. 사업추진 체계



2-2. 번역 및 분류 대상 선정 및 의뢰

(1) 의뢰 물량 선정

- 번역 및 분류 대상의 선정과 목록의 작성은 특허청이 수행함
- 상표심사정책과장은 연간 번역 및 분류 의뢰 물량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 번역 및 분류 의뢰 물량을 상품류 별로 월별 배분하여 전문기관에 통보함
- 상표심사정책과와 전문기관은 통보된 계획물량에 따라 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시 협의함

(2) 의뢰시기

- 월별 사업량은 특허청과 전문기관이 맺은 계약물량을 월별로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출원량과 심사실정 등을 고려하여 조정가능

(3) 의뢰대상

- 번역 및 분류의뢰 대상은 “니스 분류(국제상품분류)”에 따라 선정의뢰 하되,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상표 출원과 심사진행 현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월 단위로 결정함
- 번역의뢰 대상 건은 1개 국제상표등록출원서를 1개 의뢰 건으로 간주하고 분류의뢰대상은 1개 상품을 1개 의뢰건으로 간주하고 번역을 한 전문기관에 우선 의뢰함을 원칙으로 함
- 번역 및 분류 의뢰는 특허청 상표 심사시스템에 의해 처리함
- 특허청은 목록의 통보와 함께 번역 및 분류에 필요한 출원 상표의 다음 정보를 전문기관에 제공함
 - 국제등록번호, 출원번호, 출원일자, 출원인 명, 상품류, 지정상품의 영문상품명 등 서지사항 정보

2-3. 지정상품의 번역

(1) 수행인력의 지정

- 지정상품의 번역은 전문기관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, 전문기관은 특허청으로부터 의뢰받은 번역물량에 대한 번역업무를 수행시 전담 수행 인력을 지정하여 운영
- 업무수행인력의 지정 및 교체시 다음 사항 고려
 - 국제상표등록출원상표에 관한 이론교육, 현장실습 교육 등의 직무교육 및 실무수습교육을 이수하거나 상표 관련 실무 경력이 있는 인력

- 수행 인력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교체내용을 당해 상표심사정책과장에 통보

(2) 번역대상 : 특허청 '2024년도 상표심사지원사업 기본계획'에 의거하되, 니스분류(국제상품분류)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영문 지정상품

(3) 번역방법

- 상품명칭 번역의 방법과 절차는 원칙적으로 특허청이 정한 과업지시서와 전문기관이 작성한 사업수행계획서가 정한 바에 의함
- 본 사업에서 “지정상품의 번역”이라 함은 특허청이 번역 의뢰한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영문지정상품명을 문법에 맞게 국문으로 번역하고 이를 전자화하여 DB를 구축하는 것을 말함
- 지정상품의 번역을 의뢰한 목록상의 영문 지정상품 자체에 오류가 있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특허청(분류정책담당관)과 미리 협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
- 특허청은 보유한 국제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의 번역업무와 관련된 정보 중에서 이미 공개 또는 공지된 다음 정보를 전문기관에 제공함
 - 유사상품 심사기준(니스 제9판, 니스 제10판, 니스 제11판 기준), 국제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 분류 심사지침서, 상품 및 서비스업 분류목록, 상품·서비스업 유사군 코드 해설집

2-4. 지정상품의 분류

(1) 수행인력의 지정

- 지정상품의 분류는 전문기관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, 전문기관은 특허청으로부터 의뢰받은 분류물량에 대한 분류업무를 수행시 전담수행인력을 지정하여 운영
- 업무수행인력의 지정 및 교체 시 다음 사항 고려
 - 상표에 관한 이론교육, 현장실습 교육 등의 직무교육 및 실무수습교육을 이수하거나 상표 관련 실무 경력이 있는 인력
 - 수행 인력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교체내용을 당해 상표심사정책과장에 통보

(2) 분류대상 : 특허청 '2024년도 상표심사지원사업 기본계획'에 의거하되, 니스분류(국제상품분류)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영문 지정상품

(3) 분류방법

- 상품 분류의 방법과 절차는 원칙적으로 특허청이 정한 과업지시서와 전문기관이 작성한 사업수행계획서가 정한 바에 의함
- 본 사업에서 “국제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분류”라 함은 특허청이 조사 분류 의뢰한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을 상품분류체계와 상품 분류기준에 의거, 축적된 정보와 자료 검색을 통해 유사군 코드를 부여하는 것을 말함
- 명확한 지정상품인 경우에는 해당 유사군코드를 부여하고 명확하지 않을 시에는 미확정 원인인 타류지정, 포괄명칭, 기타불명확 등으로 표기하여 상표심사관에게 이송함
- 본 사업에서 상품 분류는 원칙적으로 상표법령, 유사상품 심사기준, 상품의 명칭과 류구분에 관한 고시, 상품·서비스업 유사군 코드 해설집, 서비스표 심사 세부 처리지침 및 요령, 마드리드 국제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 심사지침서이 정한 기준에 의하되 니스 협정의 류별 특징, 한국 유사군 코드의 개별 특성을 고려하여 판단함
- 특허청은 보유한 상품 관련 정보 중에서 다음 정보를 전문기관에 제공함
 - 유사상품 심사기준(니스 제9판, 니스 제10판, 니스 제11판 기준), 상품 및 서비스업 분류목록, 상품·서비스업 유사군 코드 해설집, 마드리드 국제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 분류 심사지침서
 - 구축된 상품분류 데이터베이스
 - 특허청이 보유한 국제상표등록출원 상품분류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

2-5. 보고서의 납품 및 접수

(1) 결과납품

- 1개월 단위의 지정상품 번역 및 분류 보고서 납품
- 전문기관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『국제상표등록출원 영문지정 상품번역 결과 납품서』,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『국제상표등록출원

영문지정상품 분류 결과 납품서』, 별지 제5호 서식에 『국제상표등록출원 영문지정상품 분류 결과 납품내역서』 및 『국제상표등록출원 영문지정상품 번역 보고서』, 『국제상표등록출원 영문지정상품 분류 보고서』를 서면 및 특허청이 지정하는 형식의 전자데이터(특허청 분류 시스템에 탑재 가능한 전자파일)로 외부와 차단된 전용망을 통하여 납품

- 『국제상표등록출원 영문지정상품 번역 보고서』는 번역의뢰 상품의 서지사항, 니스분류(국제상품분류), 번역 의뢰된 상품·서비스업의 국문지정상품명 공고용 번역문과 1상품 1셀 형식의 번역문) 등을 포함한 결과보고서와 지정상품 번역 LIST를 함께 제출
- 『국제상표등록출원 영문지정상품 분류 보고서』는 분류의뢰 상품의 서지사항, 니스분류(국제상품분류), 유사군 코드, 분류 미확정 원인, 검토의견 등을 포함한 결과 보고서와 지정상품 분류 LIST를 함께 제출

(2) 납품기간

- 차수별 번역 및 분류 의뢰에 대한 납품은 번역 및 분류 의뢰 후 40일 이내(단, 번역 완료된 보고서에 대하여 심사의 신속성을 위해 수시 납품 가능)

(3) 납품기간의 연장

- 지정상품의 명칭이 난해하여 납품기간 내 번역 및 분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, 번역 및 분류담당자는 사전에 특허청의 상표심사정책과 사업담당자와 협의하고 허락을 득한 후 납품기간을 연장(이 경우, 연장된 일수는 번역이행 납품기간으로 보며 지체상금은 부과하지 않음)

(4) 보고서 검수

- 납품 목록 및 보고서의 검수와 검사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특허청이 실시함
 - 1차 검수 : 물량 검수(상표심사정책과)
 - 2차 검사 : 내용 검사(국제상표심사관)

- 보고서 검수는 의뢰목록과 납품목록이 일치하는지, 납품목록과 보고서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조사하며, 일치하지 않는 목록이 있는 때에는 일치하는 목록만을 검수하고 일치하지 않는 목록은 계약 당시에 정한 기준에 따라 처리함
- 검사는 상표심사관이 검사하고 검사결과를 「상표조사 등 상표심사 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」(특허청 고시 제2021-21호) [별표2의2] “분류원 품질평가 기준”에 따라 검수자(상표심사정책과)에 통보함
- 검사결과 “오번역” 또는 “오분류”로 통보된 보고서는 전문기관에 소명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며, 계약 당시에 정한 기준에 따라 처리함

2-6. 대가의 지급 및 정산

- 용역대금은 전문기관의 청구에 의거하여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되, 계약 당시에 정한 기준에 따름

3. 비밀 준수 및 보안관리

3-1. 비밀 준수 의무

- 전문기관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됨
- 전문기관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가 본 사업과 관련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때에는 특허법 제226조의2, 디자인보호법 제226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69조 및 제70조 내지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청 직원과 같은 기준으로 처벌됨

3-2. 인력 및 자료의 보안

- 전문기관은 정보의 중요도, 정보의 절취 및 유출시 손실가치, 파괴시 복구비용, 정보의 사용자 등에 따라 보안등급을 분류하고 각각에 맞는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함
- 전문기관은 보안 관리의 중요성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자체 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해야 함

3-3. 장비 및 시설 보안

- 전문기관은 개인용 PC를 통한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 출력용 주변기기(CD-R/RW, 하드랙 등)는 지정한 PC에만 장착하고 주변기기의 장착을 제한해야 함

-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전산장비는 사용자 및 용도에 따라 관리 대장에 등록하여 사용해야 함
- 전문기관은 외부 컴퓨터 바이러스의 침입으로부터 자료를 보호하기 위해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해야 함
- 전문기관은 시설보안을 위해 외부인력의 출입통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

4. 사업운영·감독 및 평가, 기타 사항

4-1. 사업운영·감독 및 평가

- 특허청은 상표법령, 특허청고시(제2021-21호) 및 사업 세부지침 등의 규정에 따라 본 사업의 운영 및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
- 특허청은 본 사업과 관련한 전문기관의 사업내용을 평가할 수 있으며, 그 결과를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음

4-2. 기타 사항

- 본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허청과 전문기관의 합의를 거쳐 본 과업지시서를 보완 또는 변경할 수 있음

[서식]

[별지 제1호 서식] 국제상표등록출원 영문지정상품 번역 의뢰서

[별지 제2호 서식] 국제상표등록출원 영문지정상품 분류 의뢰서

[별지 제3호 서식] 국제상표등록출원 영문지정상품 번역결과 납품서

[별지 제4호 서식] 국제상표등록출원 영문지정상품 분류결과 납품서

[별지 제5호 서식] 국제상표등록출원 영문지정상품 분류결과 납품내역서

[별지 제6호 서식] 납품기간 연장 승인서

[별지 제1호 서식]

()월 국제상표등록출원 영문지정상품 번역 의뢰서

번역 의뢰일 :

연번	국제등록번호	접수번호	출원일자	지정상품(영문)	출원인명	비고

[별지 제2호 서식]

()월 국제상표등록출원 영문지정상품 분류 의뢰서

분류 의뢰일 :

연번	국제등록번호	접수번호	의뢰일자	니스 버전	니스류	영문지정상품	국문지정상품	출원일자	상표명	비고

[별지 제3호 서식]

()월 국제상표등록출원 영문지정상품 번역 결과 납품서

납품서제출일 :

전문기관명 :

연번	접수번호	상품개수	의뢰일자	납품일자	지체일수	비고

[별지 제4호 서식]

()월 국제상표등록출원 영문지정상품 분류 결과 납품서

납품서제출일 :

전문기관명 :

사업명	계약물량	납품건(월)	비고

[별지 제5호 서식]

()월 국제상표등록출원 영문지정상품 분류 결과 납품내역서

납품서제출일 :

전문기관명 :

연번	접수번호	상품수	의뢰일자	납품일자	비고

[별지 제6호 서식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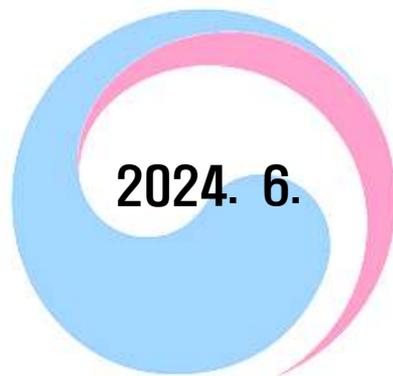
납품기간 연장 승인서

기간연장승인일 : 20

연번	출원번호	조사연장기간	연장사유	분류사업 담당자

붙임 1-3

2024년도 도형상표분류사업 과업지시서



**상표디자인심사국
상표심사정책과**

목 차

1. 사업개요	1
1-1. 사업의 명칭	1
1-2. 사업의 목적	1
1-3. 사업의 내용	1
1-4. 사업기간 및 사업량	1
2. 사업수행 절차 및 방법	2
2-1. 사업추진 체계	2
2-2. 도형 분류대상 선정 및 의뢰	3
2-3. 도형상표 분류	3
2-4. 보고서의 납품 및 검수	4
2-5. 대가의 지급 및 정산	6
3. 비밀 준수 및 보안관리	6
3-1. 비밀준수 의무	6
3-2. 인력 및 자료의 보안	6
3-3. 시설 및 장비의 보안	6
4. 사업운영·감독 및 평가, 기타 사항	7
4-1. 사업운영·감독 및 평가	7
4-2. 기타사항	7
[서식]	8

1. 사업개요

1-1. 사업의 명칭

- 2024년도 도형상표분류사업

1-2. 사업의 목적

- 상표 심사의 필수과정 중의 하나인 도형상표에 대한 도형 코드 부여를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함으로써,
- 도형상표분류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여 적정기간 내에 상표 심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심사품질의 향상에도 이바지하기 위함

1-3. 사업의 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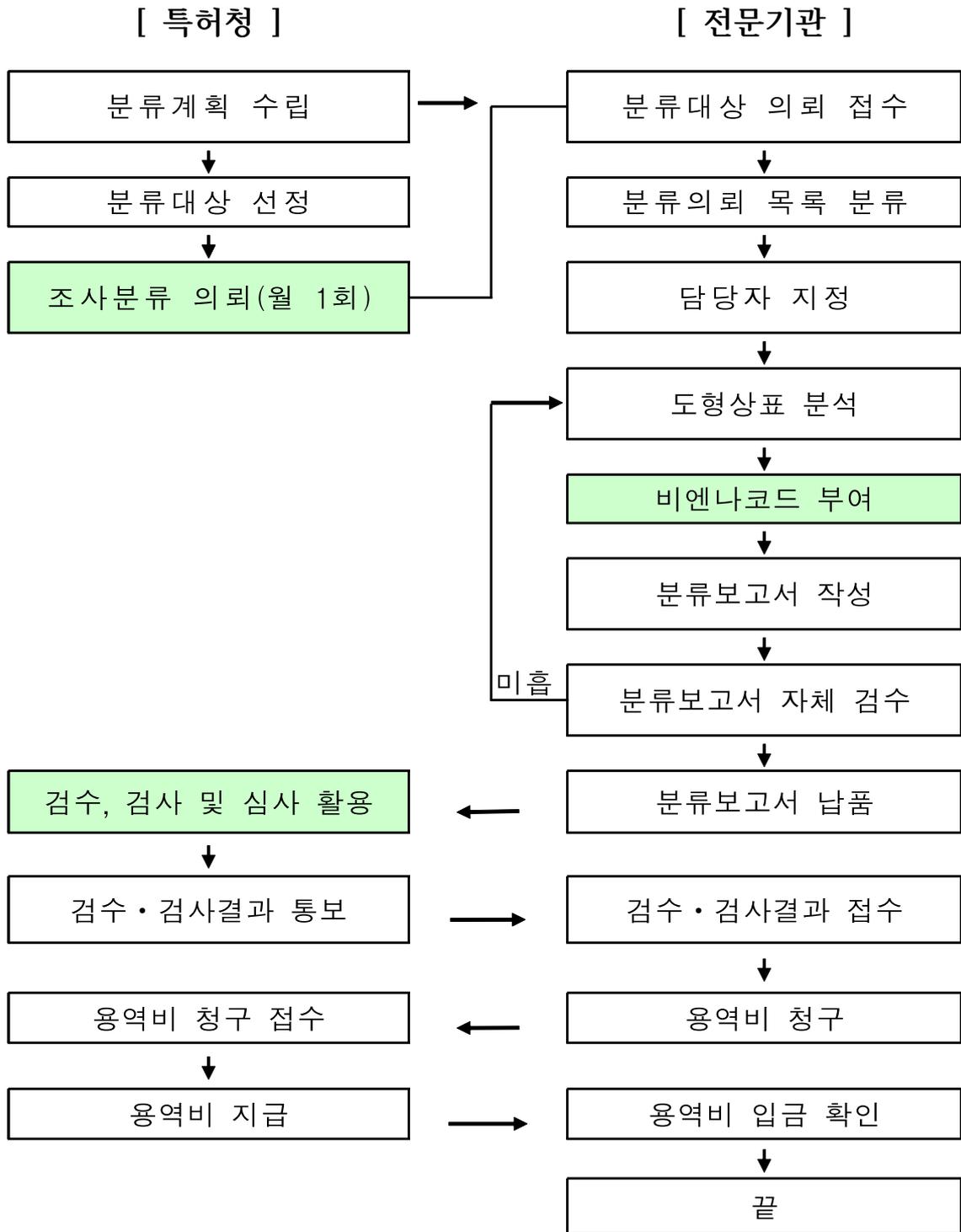
- 특허청이 분류 의뢰한 도형상표를 도형상표 분류기준에 맞게 조사 분류하여 비엔나분류 코드를 부여하고,
- 그 결과를 도형상표 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

1-4. 사업기간 및 사업량

- 사업기간은 2024. 7. 1로부터 2024. 12. 31까지임
- 1월 단위로 납품하며, 전문기관별 사업량은 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름

2. 사업수행 절차 및 방법

2-1. 사업추진 체계



2-2. 도형 분류 대상 선정 및 의뢰

(1) 의뢰 물량 선정

- 분류대상 상표의 선정과 목록의 작성은 특허청이 수행함
- 상표심사정책과장은 연간 분류 의뢰 물량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 분류 의뢰 물량을 월별 배분하여 전문기관에 통보함
- 상표심사정책과와 전문기관은 통보된 계획물량에 따라 용역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수시 협의함

(2) 의뢰시기

- 조사대상 상표는 상표 출원과 심사진행 현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월1회 의뢰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추가의뢰토록 함
- 월별 사업량은 특허청과 전문기관이 맺은 계약물량을 월별로 배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출원량과 심사실정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

(3) 의뢰대상 및 의뢰방식

- 도형 분류 의뢰대상은 각종 사물 및 기하도형, 천체 등 순수 문자상표가 아닌 도안화된 그림으로 출원한 상표로 순수 도형상표와 도형과 문자가 결합한 복합상표
- 도형분류 의뢰는 특허청 상표 심사시스템에 의해 처리함
- 특허청은 목록의 통보와 함께 분류에 필요한 출원 상표의 다음 정보를 전문기관에 제공함
 - 출원번호, 출원일자, 상표의 명칭 등 서지사항 정보
 - 출원 도형상표의 이미지 정보

2-3. 도형상표 분류

(1) 분류조사원의 지정

- 도형상표의 분류는 전문기관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, 전문기관은 특허청으로부터 의뢰받은 분류물량에 대한 분류업무를 수행시 전담 분류조사원을 지정하여 운영
- 분류조사원의 지정 및 교체시 다음 사항 고려
 - 상표에 관한 이론교육, 현장실습 교육 등의 직무교육 및 실무수습 교육을 이수하거나 상표 관련 실무 경력이 있는 인력

- 분류조사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교체내용을 당해 상표심사정책과장에 통보

(2) **분류대상** : 특허청 '2024년도 상표심사지원사업 기본계획'에 의거하되, 그림으로 출원한 상표로 순수 도형상표와 도형과 문자가 결합한 복합상표'

(3) **분류방법**

- 도형상표 분류의 방법과 절차는 원칙적으로 특허청이 정한 과업지시서와 전문기관이 작성한 사업수행계획서가 정한 바에 의함
- 본 사업에서 “도형상표분류”라 함은 특허청이 분류 의뢰한 도형상표의 도형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숫자로 코드화한 체계(도형분류코드)에 따라 구분기호를 부여하는 것을 말함
- 본 사업에서 도형상표 분류는 원칙적으로 상표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21조 내지 제23조, 도형상표분류집, 도형상표 분류기준, 비엔나분류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
- 도형상표 분류를 의뢰한 도형상표의 표장(도형, 이미지)에 오류나 불명확 등으로 도형상표 분류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때에는 특허청(도형상표분류담당)과 미리 협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
- 특허청은 보유한 도형상표 분류 정보 중에서 이미 공개 또는 공지된 다음 정보를 전문기관에 제공함
 - 특허청이 발행한 도형상표 분류집, 도형상표 분류기준 등
 - 특허청이 보유한 도형 상표분류 데이터베이스

2-4. 보고서의 납품 및 접수

(1) **결과납품**

- 1개월 단위의 도형상표 분류 보고서 납품
- 전문기관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「도형상표 분류 결과 납품서」,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「도형상표분류 결과 납품내역서」 및 「도형상표 분류 결과 보고서」를 서면 및 특허청이 지정하는 형식의 전자데이터(특허청 분류시스템에 탑재 가능한 전자파일)로 외부와 차단된 전용망을 통하여 납품함

- 도형상표 분류 보고서는 분류의뢰 상표의 서지사항, 비엔나분류, 미확정원인, 검토의견 등을 포함한 도형상표 분류보고서와 도형상표 분류 LIST 등을 함께 제출

(2) 납품기간

- 납품 목록과 분류 결과보고서는 분류의뢰 목록에 맞춰 월별로 납품함 (단, 분류 완료된 보고서에 대하여 심사의 신속성을 위해 수시 납품 가능)

(3) 납품기간의 연장

- 도형상표 분류가 난해하는 등 납품기간 내 분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, 분류조사원은 사전에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 사업담당자와 협의하고 허락을 득한 후 납품기간을 연장(이 경우, 연장된 일수는 조사 이행 납품기간으로 보며 지체상금은 부과하지 아니함)

(4) 보고서 검수

- 납품 목록 및 보고서의 검수와 검사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특허청이 실시함
 - 1차 검수 : 물량 검수(상표심사정책과)
 - 2차 검사 : 내용 검사(도형상표분류담당 또는 상표심사관)
- 보고서 검수는 의뢰목록과 납품목록이 일치하는지와 납품목록과 보고서의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조사하며, 일치하지 않는 목록이 있는 때에는 일치하는 목록만을 검수하고 일치하지 않는 목록은 계약 당시 정한 기준에 따라 처리함
- 검사는 상표심사관이 검사하고 검사결과를 「상표조사 등 상표심사 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」(특허청 고시 제2021-21호) [별표2의2] “분류원 품질평가 기준”에 따라 검수자(상표심사정책과)에 통보함
- 검사결과 “분류 불가능”으로 보고된 상품은 그 사유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처리하며, “분류 불가능”의 사유가 적정한 경우에는 평가점수 산출 대상에서 제외함
- 검사결과 “오분류”로 통보된 보고서는 전문기관에 소명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며, 계약 당시에 정한 기준에 따라 처리함.

2-5. 대가의 지급 및 정산

- 용역대금은 전문기관의 청구에 의거하여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되, 계약 당시에 정한 기준에 따름

3. 비밀준수 및 보안관리

3-1. 비밀준수 의무

- 전문기관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됨
- 전문기관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가 본 사업과 관련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때에는 특허법 제226조의2, 디자인보호법 제226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69조 및 제70조 내지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청 직원과 같은 기준으로 처벌됨

3-2. 인력 및 자료의 보안

- 전문기관은 조사인력이 전용사무실에서만 도형상표 분류업무를 수행하고, 공개 또는 공지된 정보가 아닌 자료를 전용사무실의 밖으로 유출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함
- 전문기관은 정보의 중요도, 정보의 절취 및 유출시 손실가치, 파괴시 복구비용, 정보의 사용자 등에 따라 보안등급을 분류하고 각각에 맞는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함
- 전문기관은 보안관리의 중요성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자체 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해야 함

3-3. 시설 및 장비의 보안

- 전문기관은 개인용 PC를 통한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 출력용 주변기기(CD-R/RW, 하드랙 등)는 지정한 PC에만 장착하고 주변기기의 장착을 제한해야 함
-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전산장비는 사용자 및 용도에 따라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사용해야 함
- 전문기관은 외부 컴퓨터 바이러스의 침입으로부터 자료를 보호하기 위해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해야 함
- 전문기관은 시설보안을 위해 외부인력의 출입통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

4. 사업운영·감독 및 평가, 기타 사항

4-1. 사업운영·감독 및 평가

- 특허청은 상표법령, 특허청 고시(제2021-21호) 및 사업 세부지침 등의 규정에 따라 본 사업의 운영 및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
- 특허청은 본 사업과 관련한 전문기관의 사업내용을 평가할 수 있으며, 그 결과를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음

4-2. 기타 사항

- 본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허청과 전문기관의 합의를 거쳐 본 과업지시서를 보완 또는 변경할 수 있음

[서식]

[별지 제1호 서식] 도형상표 분류 의뢰서

[별지 제2호 서식] 도형상표 분류 결과 납품서

[별지 제3호 서식] 도형상표 분류 결과 납품 내역서

[별지 제4호 서식] 납품기간 연장 승인서

[별지 제1호 서식]

()월 도형상표 분류 의뢰서

분류의뢰일 : 20

연번	출원번호	출원일자	류구분	상표명(한글)	상표명(영문)	출원인명

[별지 제2호 서식]

()월 도형상표 분류 결과 납품서

의뢰일자 : 20

납품일자 : 20

전문기관 :

사업명	계약물량	의뢰건	납품건	비고

[별지 제3호 서식]

()월 도형상표 분류 결과 납품내역서

의뢰일자 : 20

납품일자 : 20

전문기관 :

연번	출원번호	의뢰일자	납품일자

[별지 제4호 서식]

납품기간 연장 승인서

기간연장승인일 : 20

연번	출원번호	조사연장기간	연장사유	사업담당자